V 결어

자율주행차도 자동차의 일종이다. 미래에는 자율주행차가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의 일종으로 여겨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는 자동차보험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와 '자동차보험' 각각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융합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자율주행차 전문가들에게 자동차보험을, 자동차보험 전문가들에게 자율주행차를 간략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Ⅱ장에서 자율주행차 및 자동차보험의 현황을 제도적인 관점에서 정리해보았다. 자율주행차와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관점 외에 각각 기술적·산업적 관점의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본고에서는 제도적인 측면 위주로 살펴보다 보니 실질적이고 입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자율주행차에 관한 지식이 일천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아직 공부가 부족하여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앞으로 자율주행차 전문가들과 자동차보험 전문가들이 상호 교류하며 활발한 논의를 펼쳐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 및 고민해왔던 쟁점들을 소개하고, 잠정적인 의견도 제시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주요국 제도를 책임법제와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비교해보았으나, 이 역시 제한적이고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자동차보험의 핵심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책임법제와 의무보험제도라고 생각하여 이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실제 자동차보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구제 이후의 구상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보험료도 적절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리적·실무적인 측면에서 주요국 제도에 대한 보다 폭넓고 세밀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피해자 구제 단계에서 적용되는 소유자책임 외에 구상 단계에서 적용되는 제조물책임, 통신사업자의 책임, 국가·지자체 등 인프라 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사고에 대한 책임법제, 인공지능 제작사의 책임 문제 및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주요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바, 각각의 주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자율주행차 전용보험이나 자율주

행차 특약의 피보험자, 보험사고, 보상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자율주행차 보험요율, 사고빈도 및 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차 시대의 정부보장사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차사고 피해자와 이용자를 충실히 보호하면서 자율주행차 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험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